



정 보 통 신 부

수신자 김기창 교수님 등

(경유)

제목 민원에 대한 답변

1. 귀하의 민원('07.5.16) 관련입니다.

2.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.

가. 질의 1. 가 관련

○ 금결원의 가입자 S/W는 전자서명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점검을 받았으므로, 기술규격의 요건을 충족한 것임

- 다만, 전자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금결원의 가입자 S/W를 수정없이 이용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의 필요성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

나. 질의 1. 나 관련

○ 금결원에 확인한 결과, 금결원은 다음 사이트에 자신의 가입자 S/W를 제공 중

- www.giro.or.kr, e-giro.giro.or.kr, www.ap2you.or.kr, www.rk.or.kr,
www.bankpay.or.kr/BankPayEFT.cab, www.yessign.or.kr/yessignCert5/yessign5.cab,
www.ubi.or.kr, www.trusbill.or.kr/files/yessign5/yessign5.cab, www.cmsedi.or.kr,
asp.cmsedi.or.kr, ww.kftcvan.or.kr, www.yessign.or.kr

다. 질의 1. 다 관련

○ 금결원에 확인한 결과, 금결원은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가입자 S/W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

라. 질의 2. 가 관련

○ 전자서명법에는 은행 등의 전자거래업체가 공인인증기관의 S/W를 이용해야 하는지 또는 전문보안업체의 S/W를 이용해야 하는지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음

마. 질의 2. 나 관련

○ 등록대행기관은 지침 제2조제6호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(공인인증기관, 등록대행기관)의 사적 계약에 따라,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으로써, 지침 제24조제1항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

○ 향후, 제24조제1항을 등록대행기관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 검토토록

하겠으나, 확대 해석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

바. 질의 3 관련

○ 전문보안업체의 S/W 이용여부는 은행 등 전자거래업체의 영업상의 자율 선택사항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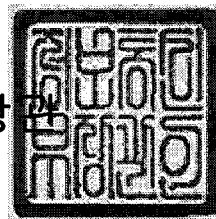
○ 다만, 전문보안업체의 가입자 S/W에 대해서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해 안전성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임

사. 질의 4 관련

○ 타 공인인증기관의 경우, 전자거래업체에 따라 자신의 S/W 또는 전문보안업체의 S/W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음

○ 전자서명법에는 은행 등의 전자거래업체가 공인인증기관의 S/W를 이용해야 하는지 또는 전문보안업체의 S/W를 이용해야 하는지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음. 끝.

정보통신부장관



★직원

황보성

정보윤리팀장

전결 05/29
이태희

협조자

시행 정보윤리팀-1178 (2007.05.29.) 접수

☎
전화

/전송

/ 공개